

「지속가능한 도시-대학 상생발전 프로젝트」 2026년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

(재)대구테크노파크는 지속가능한 도시-대학 상생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「2026년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」을 시행하오니 사업에 참여할 (예비)로컬크리에이터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년 3월

(재)대구테크노파크 원장

1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○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 로컬크리에이터(지역가치 창업가) 발굴 및 육성

※ 본 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, 하단의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 및 요건을 참고하여 본인의 사업 모델이 해당하는지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
< [참고]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 및 요건 >

‘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’

·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‘지역가치 창업가’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

① 지역가치 ② 로컬푸드 ③ 지역기반제조 ④ 지역특화관광 ⑤ 거점브랜드 ⑥ 디지털문화체험 ⑦ 자연친화활동

* 세부내역은 참고1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참조

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

- 지역의 유·무형자원(역사전통, 문화예술, 자연생태, 생활문화, 지역특산물 등)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

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자

-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 수립을 통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을 이행하는 자

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

-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속성을 지닌 만큼, 지역 내 고용창출, 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의 활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

2

지원개요

□ 지원대상

-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청년(만19세~39세) 중 로컬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로컬창업자 및 3년 미만 초기 로컬창업자
 - (예비)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 (업종 무관)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('26.3.16.)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예비로컬크리에이터
 - (초기)모집공고일('26.3.16.) 기준,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('23.03.17. 이후 사업자 등록)
- 지원기간 내 대구시 소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
 - * 대구 남구, 서구 소재 사업 등록 예정자는 가산점(5) 부여, 단 다른 소재로 사업자 등록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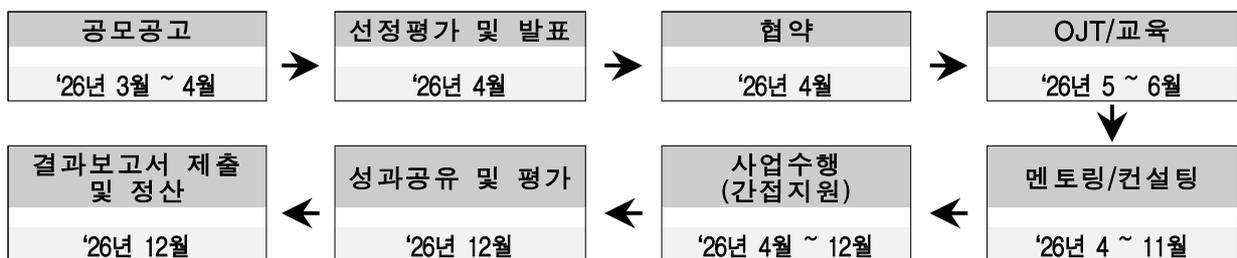
□ 모집규모 : 총 10팀

□ 지원내용

- 사업화지원금 10백만원
 - ※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급, 사업화지원금의 10%를 자기부담금으로 지출 필수
 - (예시) 지원금 10백만원 + 자기부담금(현금) 1백만원 = 총사업비 11백만원
- 분야 및 단계별 창업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제공
- 사업 종료 이후 후속지원

* 네트워킹 : 사업화 정보 제공, 기업 간 노하우 전수 등
* 컨설팅 :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
* 공간제공 : 지역대학협력센터 시설(강당, 강의실, 스튜디오 등) 지원
* 사업화 연계 : 지역 내 유관 기관 행사 연계 등

□ 사업절차 및 추진일정



※ 상기사항은 대·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

3

신청자격 및 요건

지원대상	세부요건
예비 로컬창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공고일('26.03.16.)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* (개인) 사업자등록 기준, (법인) 법인등기부등본 대표 등기기준 ▶ 협약만료 2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(사업자등록)이 가능한 자
업력 3년 이내 로컬창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('26.03.16.)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*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으로 업력 산출 *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으로 업력 산출
신청 제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,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·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, 파산면책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,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성실납세자, 국세·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가능 ③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④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일반유희주점업, 무도유희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⑤ 기타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련 사업에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⑥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(참여기업, 공동개발기관 등)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, 과제책임자,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⑦ 가상 및 공유오피스 입점 예정인 자 ⑧ 2023~2025 동일한 사업으로 수혜를 받은 자

4

선정평가

□ 평가항목

- 지역성과 성장가능성(사업성 등)에 대해 서면 및 발표평가 진행

※ 평가점수(100점) = 지역성(60점) + 성장가능성(40점), 가점사항 별도

평가지표 (배점)	세부지표	평가내용
지역성 (60)	1. 지역이해도(10)	1. 지역에 대한 이해
	2. 자원활용도(20)	2. 자원활용의 참신성 및 지역사회 연계성
	3. 지역가치 창출가능성(30)	3-1. 지역 가치 창출 전략 3-2.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
성장 가능성 (40)	4. 문제인식(15)	4-1. 아이템의 개발동기 4-2. 아이템의 목적(필요성)
	5. 실현가능성(15)	5-1. 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5-2. 아이템의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
	6. 성장전략(5)	6-1.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
		6-2.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
	7. 수행의지 및 역량(5)	7. 사업 수행의지 및 대표자 역량
		100
가점	지역대학교 교과 과정 이수 및 사업자 소재지	①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교과과정 수강(3) ②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교과과정 수료(5) ③ 로컬크리에이터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팀(5) ④ 대구 서구, 남구 소재 사업자 및 등록 예정(5)

* ① ~ ③ 중복 시 가장 높은 점수의 항목만 적용 / ① ~ ③, ④ 중복 가능(최대 10점)

□ 평가절차

평가단계		평가개요
1 단 계	요건검토 및 서면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평가위원 : 지역전문가, 시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대상 : 사업신청자 전원 평가방법 :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지역성 및 성장가능성을 서면 평가하고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대면평가 대상 선정 대면평가 대상자 중 요건검토 탈락자는 대면평가 제외 ☞ 타사업간 중복지원 제한사업(하단 유의사항 참고)
2 단 계	대면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평가위원 : 지역전문가, 시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대상 : 서면평가 및 요건검토 통과자 평가방법 : 대상자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, 지역성 및 성장 가능성(사업성 등)에 대해 대면 평가로 최종선정 대상 선정

※ 대면평가 시, 대표자 본인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5

신청, 접수 및 문의

□ 신청기간

- 지원사업 신청 : 2026년 3월 16일(월) ~ 4월 6일(월) 18:00 까지
- 근무시간 內(09:00~18:00) 제출 기준이며,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

□ 신청서 교부 및 안내

- 대구광역시 민원·공모 홈서비스(minwon.daegu.go.kr) 및 (재)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(www.dgtp.or.kr) 사업공고 참고

□ 문의 및 접수방법

- 문의 :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지역인재양성센터 장수원 선임연구원
- Tel. 053-255-8774 / e-mail: tndnjs7264@dgtp.or.kr
- 접수 : 이메일 접수
- 아래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 후 제출

□ 제출서류

구분		제출서류 목록	
공통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계획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공고문에 첨부된 [붙임1]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임의 양식 사용불가 • 개인정보활용동의서, 서약서 	
		• 주민등록 초본(주소확인용)	(발급처) 정부24
예비로컬창업		• 사실증명원(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)	
초기로컬창업자	개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실증명원(총사업자등록내역) • 2023~2025 재무재표 	(발급처) 홈택스 등
	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• 사실증명원(총사업자등록내역) • 2023~2025 재무재표 	
채무변제 관련 서류 (해당시)		• 법원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결정문 등	

※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하며, 추후 검증을 위해 최신본을 요청할 수 있음

6

선정자의 의무 및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대구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며, 대구시 보조금 집행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 필요
- 예비창업자는 협약 종료 **2개월 전까지** 대구시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(사업자등록)을 이행 필수
-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 대응해야함
- 운영기관이 주관하는 협약필수 교육 및 성과공유회 등 필히 참석해야함
- 협약종료일로부터 **1년 이상** 창업을 유지해야하며, 협약종료 이후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함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협약중단, 사업비환수,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선정취소,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, 정부지원금 환수,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제출 서류에 누락·착오 등이 있더라도 제출 마감 이후 수정·변경 불가
- 대면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·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본 사업은 중복지원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, 타 지원사업에서 중복지원을 금하는 경우 지원가능 여부는 해당사업 확인 필요(지자체 내 동일 사업 아이টে으로 중복 지원 불가)
- 최종 지원금액은 조정 가능하며, 선정 후 사업수행과정에서 참여조건 미충족 시 협약 해지될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(예비)창업기업의 협약 포기, 협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(예비)창업기업과 협약을 진행할 수 있음
- 협약기간 중 사업비 부정·목적 외 사용, 지침상 제재조치 등 사유 발생 시

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해지 될 수 있음

- 협약기간 중 본 공고문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발생시 협약 해지될 수 있음
- 협약을 완료한 (예비)로컬기업은 사업 신청시 제출한 **사업계획서와 사업내용 (지역성 및 아이템 내용 등)**이 상이할 경우에는 **협약 해지될 수 있음**
- 공고 후 신청자가 적거나 적격대상자가 없을 경우 추가 모집을 할 수 있음
- 공고신청이 2배수 미만일 경우, 서류평가 단계를 생략하고 발표평가 단계로 진행될 수 있음

참고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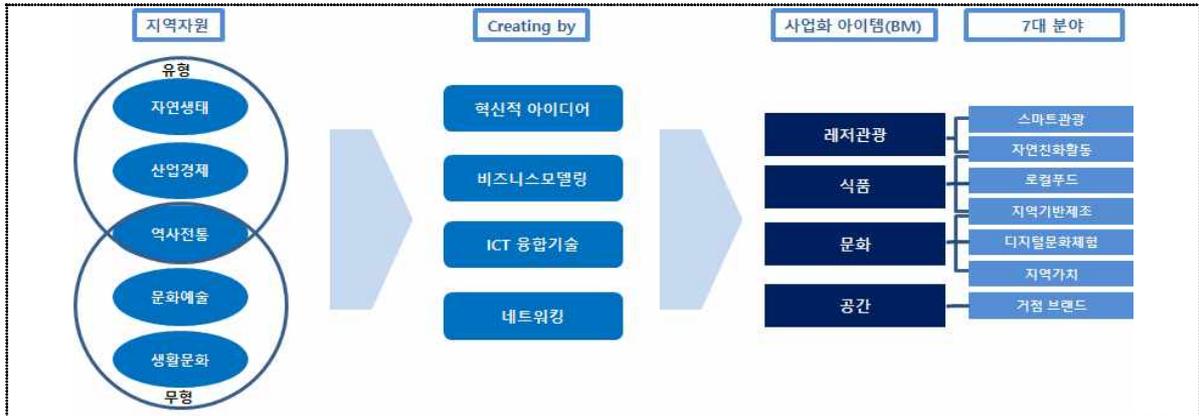
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

< 로컬크리에이터 개념 >

[정의] '지역의 자연환경,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'
 ·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

※ ① 지역가치, ② 로컬푸드, ③ 지역기반제조, ④ 지역특화관광, ⑤ 거점브랜드, ⑥ 디지털문화체험, ⑦ 자연친화활동

< 로컬크리에이터 유형 분류표 >



[요건]

- ① 지역의 유·무형자원(역사전통, 문화예술, 자연생태, 생활문화, 지역특산물 등)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자
- ②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 수립을 통해 창업하는 자
- ③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나타난 성과를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

< 로컬크리에이터의 7대 분야 >

구분	내용
지역가치	· 지역의 문화나 고유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적·문화적 가치를 창출 · (기대효과) 플랫폼과 더불어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므로, 지역을 콘텐츠화하여 다양한 비대면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가능
로컬푸드	· 지역의 특산물, 미활용 작물 등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및 유통 · (기대효과) 위생적인 환경에서 재배되는 스마트팜이나, 농수산 산지와 연결된 구독경제, 종자개발부터 유통·제조·판매 등이 다양하게 결합된 6차산업 발전
지역기반제조	·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지역특색을 반영한 제조업 · (기대효과) 수공업과 DIY 활동 증가가 예상되며, 이를 로컬제조업으로 육성
지역특화관광	· 관광자원(자연환경, 여행지 등)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 · 지역 방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 · (기대효과) VR 등을 활용한 가상 관광, 체험 등의 관광 수요증가 예상
거점브랜드	·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거점 역할 · 지역성과 희소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 · (기대효과) 쇼핑은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, 오프라인 소비는 단순소비보다는 가치소비(Meaning Out)가 중요해져 지역별 거점브랜드 육성이 필요
디지털 문화체험	· 지역별로 역사와 문화가 담긴 유적지와 문화재 등을 과학 기술 및 ICT를 활용하여 재해석 또는 체험 · (기대효과) AR, VR 등과 결합된 디지털 문화체험 콘텐츠 시장 확대 예상
자연친화활동	· 지역별로 상이한 자연환경(바다, 산, 강 등)에서 진행되는 서핑,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· (기대효과) 집단적 활동(테마파크 등)보다는 가족 또는 나홀로 단위의 레저활동(캠핑, 글램핑 등)의 수요증가 예상

참고2

창업여부 기준표

신청기업 구분	상세 구분		창업여부	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동종 사업 개시	창업아님	
		이종	창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업
			폐업 3년 초과	창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부도/파산 - 2년 초과			창업	
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	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업	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업
			폐업 3년 초과	창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업
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	
	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업
			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
		동종창업	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업
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		창업아님	
조직변경	동종유지		창업아님	
	이종		창업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	창업	

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

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
※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: 영 시행(2020.10.8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
- "개인사업자 설립일이 '20.10.8. 이전이면서,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"한 경우 "창업"으로 판단